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

사이버 폭력의 범위에 ‘딥페이크 영상 제작·반포’가 추가되고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

교육감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,

조례에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

예방 대책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

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